

특집 I / 1995년도 수의·축산 정책 세미나 ③

WTO 체제하의 검역 방향

김 옥 경

서 론

'93년 12월 UR협상이 타결되고 금년부터 세계무역 질서를 이끌어갈 WTO 출범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격동의 번혁기에 우리 수의축산업계 발전을 위해 항상 걱정하고 염려하는 대한수의사회에서 21세기를 준비하는 최고경영자 정책세미나를 개최한 데 대하여 본회 회장님인 이길재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그리고 여기 참석하신 양축농가, 학계, 연구소, 가축방역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UR협상이 타결되면서 국제간 동물 및 축산물의 교역에 대하여는 SPS 규정(위생 및 검역 규제조치 적용에 관한 협정)을 적용키로 함에 따라 기존의 검역정책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검역여건 변화속에서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하여는 지혜를 한곳에 모으고 극복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각국은 검역대상의 문제를 통상정책과 연계하여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시대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검역의 세계화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검역의 세계화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먼저 주요동물 및 축산물의 UR 협상결과를 살펴보고, SPS 규정의 내용평가 및 시사점, 검역의 제문제점, WTO 출범에 따른 검

역 방향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동물 및 축산물 UR협상 결과

※ 자료근거 : '94 축산정책 해설(농림수산부 축산국 발행)

1. 생우

▶2000년까지 수입제한을 유지하되, 쿼타는 인정하지 않다가, 2001년에 관세 41.2%로 수입자유화(쇠고기 와 같음)

2. 쇠고기

▶2000년까지는 현재와 같이 쿼타에 의한 수입제도를 유지하되, 수입쿼타는 매년 증량하고, 관세는 20%에서 '95년에 43.6%로 인상한 후, 2004년까지 40%로 감축

-2001. 1. 1에 관세 41.2%로 수입자유화

▶업계간 자율거래제도(SBS)로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은 매년 증가되고, 부과금은 감축

-「업계간 자율거래제도」란 수입쿼타의 일부물량을 수입쇠고기 실수요자인 국내 민간업체가 외국의 수출업체와 직접 상담하여 수입가격과 수입부위 등을 결정하고 부과금(Mark-up)을 납부한 후 수입하는 제도임.

-부과금은 수입 당시의 국내도매시장 가격과 수입 원가를 비교산출하며, 이렇게 산출된 부과금은 년도별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음.

	'94	'95	'96	'97	'98	'99	'00
수입쿼타	106천톤	123	147	167	187	206	225
(SBS물량비율)	(20%)	(30)	(40)	(50)	(60)	(70)	(70)
관세	20%	43.6	43.2	42.8	42.4	42.0	41.6
부과금상환	95%	70	60	40	20	10	0

3. 쇠고기 육포 및 식용설육

▶'97년 7월부터 쇠고기 육포는 관세율 30%, 식용설육은 20%로 수입자유화

4. 돼지고기(냉동)

▶'95. 1. 1부터 '97. 6. 30이전까지는 현행 양허관세(25%)로 수입쿼타 설정

-수입쿼타(정육기준) : ('95) 17,544톤 → ('96) 23,392 → ('97. 6월까지) 14,620

▶'97. 7. 1이후는 현행 양허관세를 인상(25 → 33.4%)이후 자유화하고 2004년까지 25%로 감축

5. 닭고기(냉동)

▶'95. 1. 1부터 '97. 6. 30 이전까지는 현행 양허관세(20%)로 수입쿼타 설정

-수입쿼타(지육기준) : ('95) 7,700톤 → ('96) 10,400 → ('97. 6월까지) 6,500

▶'97. 7. 1이후는 현행 양허관세를 인상(20 → 30.5%)이후 자유화하고 2004년까지 20%로 감축

SPS 규정의 내용평가 및 시사점

1. 위생 및 검역문제의 통상마찰 대두

종래에는 관련 국제기구(OIE, IPPC, CODEX)를 통해 전문적으로 다루어져 온 SPS 분야가 UR타결로 협정됨에 따라 SPS 규제 문제는 단순히 검역전문가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간 무역상의 문제로 대두되어 국가의 통상정책과 연계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SPS 규제 문제는 순수위생, 검역차원의 기술적 문제와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통상문제로 혼재하여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검역관련 규정의 국제화

UR타결 이전에는 세계 각국이 자국에 유리한 검역규정을 적용하여 간접적 무역규제 수단으로 활용

하여 왔으나, UR/SPS 규정이 합의됨에 따라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되어 위생 및 검역관련 규정의 국제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3. 합법적 수입(금지)제한 제도로서의 SPS 규정 국제기준이 없거나 국제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과학적 증거가 충분할 경우에는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수입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국가의 검역기술수준과 운용 여하에 따라서 합법적인 수입 금지제도로 활용할 수 있으나 품목이나 지역, 질병별로 규제내용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가능하므로 결국 위생 및 검역기술의 선진국이 비관세화 장벽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위험평가제도 도입

과학적 정당성없이 수입규제를 할 수 없으므로 협정문에서 객관적 지표로 제시하고 있는 위험평가제도에 근거해야 하므로 각국은 위험평가제도 도입과 운용기법 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위험평가제도를 활용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현재 동물 및 축산물의 수입 금지 해제 절차는 별첨 1과 같음).

5. 기존 수입금지 지역의 축소(수입허용지역의 확대)

기존에는 악성가축전염병 발생단위를 국가로 하여 수입금지시켜 왔으나 발생단위가 지역개념으로 바뀌게 됨으로써 악성가축전염병 발생국가내의 비발생 지역으로부터 수입이 가능하게 되어 수입허용지역 확대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반면에 악성가축전염병의 유입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되었습니다(현재 아국과의 주요 교역 국가별 List A 질병 발생 현황은 별첨 2와 같음).

6. 위생 및 검역관련 국내규정의 임의 개정 곤란 수출국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입국의 위생 및 검역관련규정 신설이나 개정은 사전에 SPS 위원회 및 관련국에 통보하고 협의해야 하는 의무규정으로 인하여 국내법이라 하더라도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개별국가의 임의 제·개정이 종전보다 어려운 것입니다.

7. 동등성 인정

수출국이 자신들의 SPS 조치로 인한 보호수준과 수입국의 SPS 조치에 의한 보호수준이 동일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경우, 수입국은 수출국의 동등성 인정 요청시 협의할 의무가 있으므로 아국에 주요 수출국인 축산 선진국가로부터 동등성 인정 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8. SPS 관련 분쟁해결 절차

위생 및 검역규제는 통상정책과 연계되어 분쟁 발생시의 해결은 WTO 규정의 “분쟁해결 및 절차에 관한 협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분쟁위원회에서는 당사국과 협의하에 위원회에서 선정한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역의 제문제점

1. 국내 규정의 국제화 미흡

UR/SPS 합의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제기준과의 조화, 동등성 원칙에 따른 수출입대책, 전염병 발생단위의 국가개념에서 지역개념으로 축소, 위험평가제도 도입 및 운용 등에 대응한 제도정비가 미흡함.

2. 검역 전문인력 부족

수입개방화에 따른 수출입 검역물량의 증가, 품목의 다양화, 수입지역의 다변화로 정밀검사 대상품목 증가, 전염병 및 위생검사항목 확대에 필요한 전문인력 등 소요인력이 절대 부족한 실정임.

3. 검역시설 및 장비부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단위가 국가개념에서 지역개념으로 바뀌게 됨으로써 악성가축전염병 발생국가내의 비발생지역으로부터 동물 및 축산물수입이 가능하게 되어 이에 대한 특수검역시설 뿐만아니라 첨단 검사장비가 보강되어야 할 것임.

4. 검역기술개발 미흡

종래의 검역정책은 악성가축전염병 발생국가로부터 수입을 원칙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정밀검사대상이나 검사항목이 한정되어 검역기술개발 또한 제한

적이었으며 UR 타결로 인한 수입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한 검역기술개발이 미흡한 실정임.

5. 검역정보수집 미흡

효과적인 검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관련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으로 각국의 검역정보수집 및 아국입장 반영, 교역 상대국의 전염병 발생 및 분포실태, 방역상황 등 각종 검역관련정보를 신속히 수집하여 이에 대응하여야 하나, 검역정보를 항시 수집, 관리, 제공할 수 있는 현지검역 인력 자체가 전무하여 검역정보수집의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6. 위생검사제도와 검사기관의 이원화

수입축산물(육류)에 대한 위생검사기준은 식품위생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위생검사기관은 농림수산부 산하 국립동물검역소에서 실시하므로 수입개방화의 검역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관련규정의 제·개정을 신속히 하여야 하나 식품위생법 담당부서인 보건복지부에 질의, 건의, 협의, 이견조정 등으로 신속 대응하기가 지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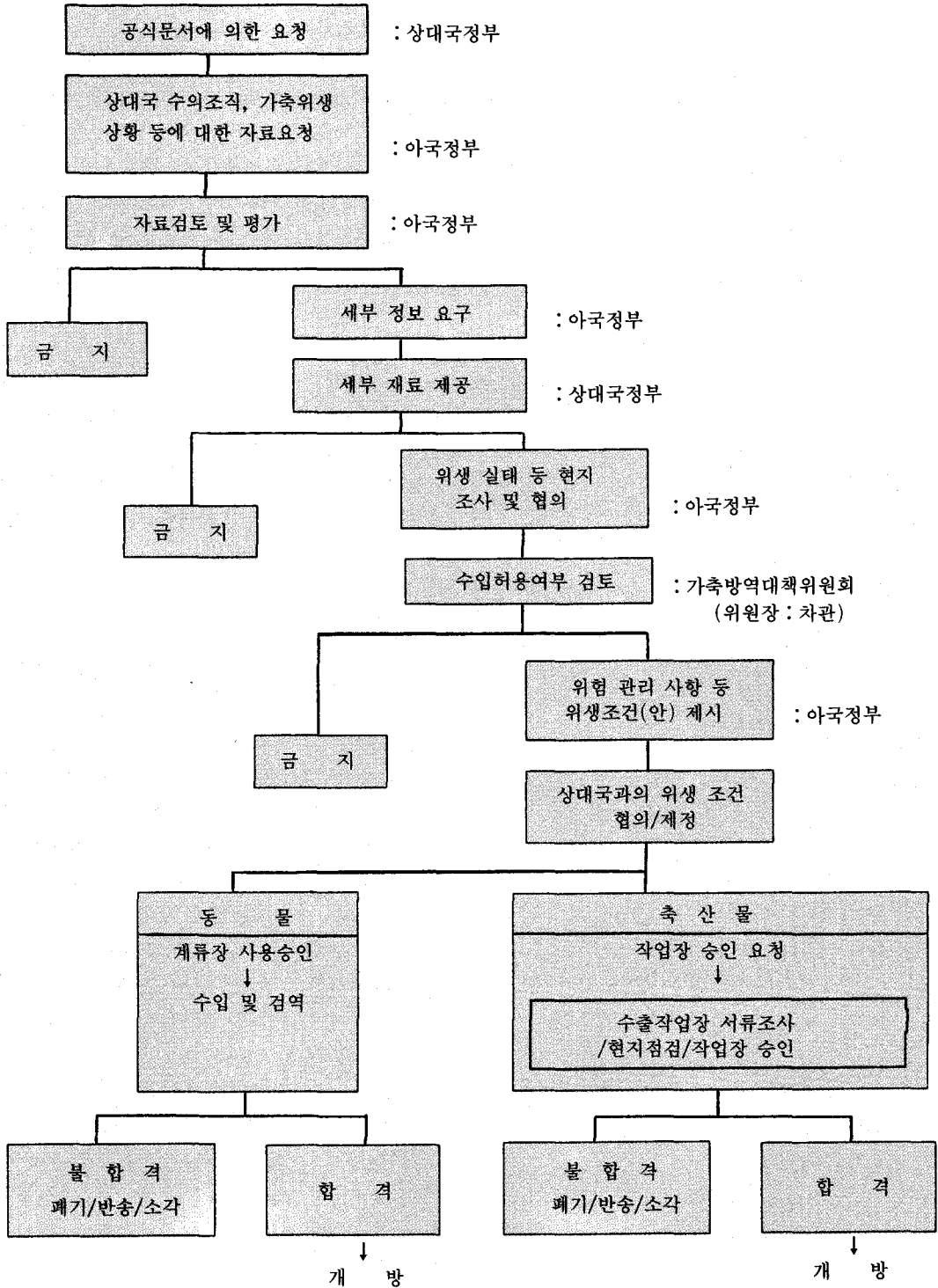
WTO 출범에 따른 검역기능강화 추진

1. 검역기능강화 5개년 계획 조기완료

농림수산부와 국립동물검역소에서는 UR협상이 타결될 것에 대비하여 '91년도에 동물검역기능강화 5개년 계획(투자금액 : 108억원)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92년 12월 UR협상이 타결되면서 업무의 시급성을 감안, 동 계획 사업기간을 '92~'96에서 '92~'95으로 1년간 앞당겨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의 추진실적은 인력증원 44명, 돈사신축 등 검역시설 확충 7,853m², 정밀검사 장비구입 174종, 전문인력 기술훈련 국외 18명, 국내 231명, 검역전산망 구축장비 20종, 동물검역 관련규정 정비 23건을 완료하였고, 금년중에는 악성가축전염병 발생국가내의 비발생지역으로 부터 우제류 동물 및 축산물 수입에 대비하여 동물 및 축산물 특수검역시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2. 2단계 동물검역 기능강화 계획 수립

동물및 축산물의 수입금지 해제절차



주요교역 국가별 List A 질병발생현황

참고 : '94 OIE Disease Information
참고 : '93 OIE World Animal Health

질병별 국가별	FMD	VS	SVD	RD	PPR	CBPP	LSD	RVF	BT	SGP	AHS	ASF	HC	FP	ND
미 국	1919	1986				1892			++				1976		
카 나 다	1952	1949				1876							1963		1973
호 주	1871			1923		1967			+				1962	1992	1932
뉴 질 랜드						1864							1953		
영 국	1981		1982		1877						1866		1987	1992	1984
에 린	1941			1877						1850			1958	1899	1992
덴 마 크	1983			1782						1879			1933		1972
스 웨 덴															
핀 란 드	1959			1877									1917		1971
화 란	1984		1992	1870						1893		1988			
중 국	(+)			1955		1985	+		+ ?	+			+		++
프 랑 스	1981		1983	1870						1964		1974	(+)	1948	(+)
대 만	1930			1950									+	1991	
태 국	+			1958											
일 본	1908		1975	1924		1941			+ ?				1992	1945	1991

주 : 년도는 최종발생 연도임
+산발적 발생 (+)예외적으로 발생
++상제성 질병 + ?혈청검사 양성

동물검역 기능강화 5개년 계획 추진시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WTO 출범에 따른 검역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2단계 동물검역 기능강화 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입니다.

가. 검역관련규정의 국제기준과 조화 추진

국내검역 관련법령, 고시, 예규 등 규정을 국제기준과 좌화시키도록 비교분석하여 제·개정할 계획이며, 위험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수입허용지역 확대에 따르는 위험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수입위생조건은 품목별, 국가별로 제정하여 수입개방화에 신속대응할 계획입니다.

나. 검역시설 확충 및 현대화

조류 특수검역시설, 부산지소 실험실 신축,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건설과 영종도 신공항 건설에 따른 품목별 검역시설은 물론 약성가축전염병 발생국가로부터 식용축산물 수입에 대비하여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냉동보관창고를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투자 계획 : 15,230백만원).

다. 첨단 정밀검사장비 보강

전염병 검사장비 및 잔류물질 분석기기 등 위생검사장비를 지속적으로 구입 보강하여 검역의 과학화를 이룩할 것입니다(수량 : 68종, 투자금액 : 3,390백만원).

라. 전문인력 기술훈련

전염병 진단기술 및 잔류물질 분석기술 연수를 위하여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 6개월 정도로 47명을 연수시켜 검역기술의 선진화를 기할 것입니다(투자금액 : 555백만원).

마. 검역전산망 구축 및 홍보강화

검역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전자 검역증명서 송달에 대비하여 검역전산시설 시스템 구축과 이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등 다가오는 정보화시대에 대비하고, 호주산 쇠고기 농약사건에서 보았듯이 검역의

중요성과 기능에 대하여 홍보를 한층 더 강화할 것 입니다(투자금액 : 2,010백만원).

바. 검역조직 및 인력증원

수입개방에 따른 검역물량 증가 등에 따른 부족한 검역인력증원 및 첨단검역장비 도입으로 인한 전문 기술요원 및 정밀검사대상 동물, 축산물의 확대, 검

사대상 전염병 확대, 잔류물질검사 대상 확대 등에 필요한 검역조직 및 인력증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본소 5과, 5지소, 8출장소 203명 → 본소 5과, 8지소(10과), 18출장소, 해외주재검역관 3명 총 424명(중 221명)].

UR협상에 따른 농축산물 수입자유화계획

구분/자유화년도		'94	'95	'96	'97	2001	2004
전체농축산물		1,312	1,312	1,312	1,312	1,312	1,312
자유화 대상 품목	통합공고	125	111	-	-	-	-
	-쌀	14	-	-	-	-	14
	-기타(TE품목)	111	111	-	-	-	-
	수출입공고 (BOP품목)	95	43	14	30	8	-
	계	220	154	14	30	8	-
자유화품목(누계)		1,092	1,246	1,260	1,290	1,298	1,298
잔존수입제한품목		220	66	52	22	14	14

'95년도 개방(154개 품목)

- 통합공고(111개 품목) : 관세상당치(TE) 개방품목(11개 품목)-소(중우/젓소, 육우, 기타), 돼지(중돈), 달(중계/185g 이하, 185g 이상), 종란, 골분, 소정액, 돼지정액, 동물의 수정란 등
- 수출입공고(43개 품목) : BOP 개방품목(2개 품목)-치즈, 조란(껍질이 붙지 않은 것)

'95년도 이후 개방(52개 품목) : BOP개방 품목

- '96. 1. 1 개방(2개 품목) : 포도, 사과주스
- '96. 7. 1 개방(12개 품목) : 버터, 연유, 인조꿀,

누에고치 등

- '97. 7. 1 개방(30개 품목) : 돼지고기, 닭고기, 천연꿀, 오렌지, 감귤, 생사 등
- 2001. 1. 1 개방(8개 품목) : 쇠고기, 일반소

2004년도 잔존품목(14개 품목)

- 벼, 메현미, 쌀현미, 멥쌀, 찰쌀, 세미, 쌀가루, 쌀분쇄물, 쌀팔렛트, 쌀압착 또는 플레이크, 베이커리중 쌀가루일 것. 베이커리중 쌀가루 이외 것으로 쌀관련물, 기타 조제 식품류중 쌀관련물.